## 특 허 법 원

제 5 - 2 부

판 결

사 건 2022허5201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영균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웅

변론종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6. 8.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8. 11. 2020당32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12. 10./ 2020. 6. 29./ 디자인등록 제1065158호
- 2) 명칭: 화경 관리용 사물인터넷(Iot) 장치
- 3)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별지 1]과 같다.

#### 나.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IoT 게이트웨이 EIOT-200D' 제품 디자인
- 2)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 [별지 2]와 같다.

#### 다. 선행디자인들

### 1) **선행디자인 1**(을 제4호증)

온라인 쇼핑몰 'E'에 2019. 11. 17.경1) 게재된 '하이박스 투명 이중도어 제어함 F 200\*150(D) 콘트롤박스 203015' 제품 광고 게시물의 내용 중에 포함된 사진에 있는 디자인으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3]의 '가'항과 같다.

#### 2) 선행디자인 2(을 제5호증)

2013. 4. 30.자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인 'F(주)//이중도어박스, BOXCO'의 내용 중에 포함된 사진에 있는 디자인으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3]의 '나'항과 같다.

<sup>1)</sup>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가장 오래된 제3자의 후기가 게재된 시점이다.

### **3) 선행디자인 3**(을 제6호증)

2019. 4. 25.자로 유튜브에 게재된 동영상인 '02 NBA NBC NBD NBE Series V2' 의 영상 중에 포함된 디자인으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3]의 '다'항과 같다.

### **4) 선행디자인 4**(을 제7호증)

온라인 쇼핑몰 'G의 BOXCO공장'에 2014. 7. 17.자로 게재된 'H 제품소개 이중도어 박스' 게시물의 내용 중에 포함된 사진에 있는 디자인으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3]의 '라'항과 같다.

### **5) 선행디자인 5**(을 제8호증)

주식회사 H에서 2010. 3. 1.부터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한 '플라스틱 엔클로져(모델명 BC-ATP-304018)'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3]의 '마'항과같다.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2020. 10. 2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양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극히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0당3235호로 심리한 후, 2022. 8. 11.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므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것임에도, 그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 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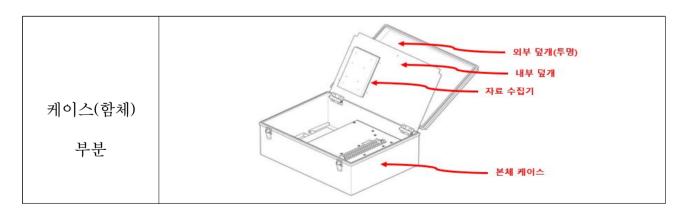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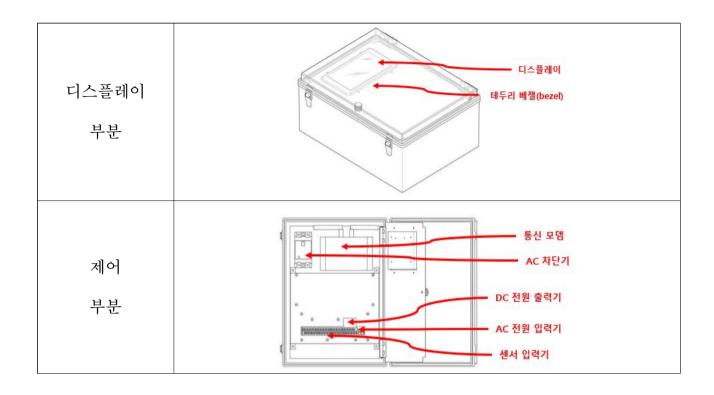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사물인터넷 장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앞서 본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각 용도와 기능 등에 비추어볼 때 양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부분에 관한 명칭 및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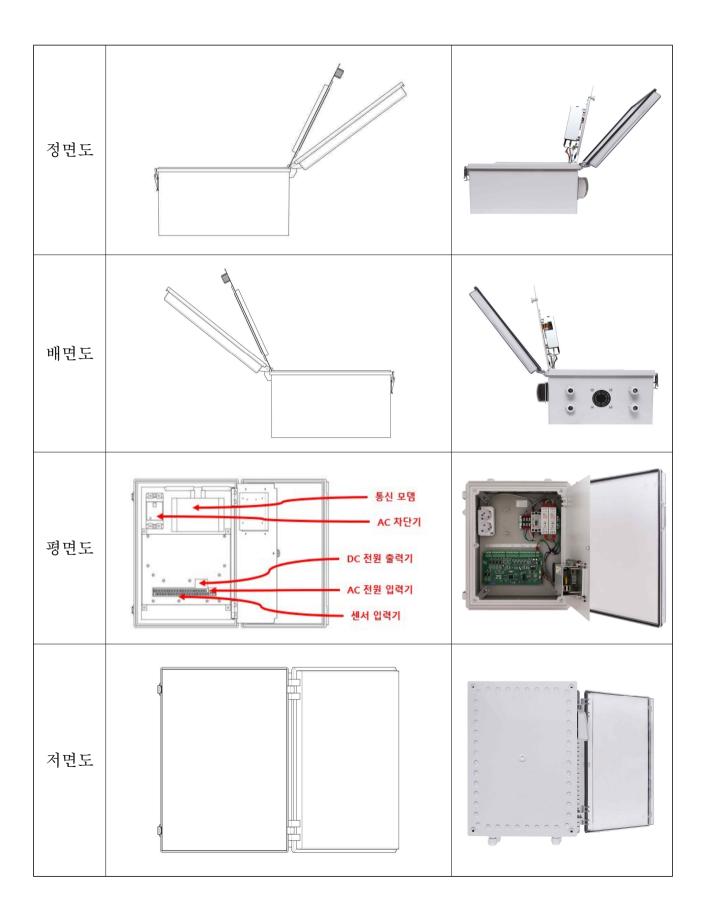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환경 관리용 사물인터넷(Iot) 장치'는, 사물 인터넷(Iot) 센서와 게이트웨이를 일 체형으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부분에 관한 명칭은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은데,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케이스 또는 함체(含體)를 구성하는 형상 이면서 그 케이스 또는 함체가 '케이스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으로 구 분되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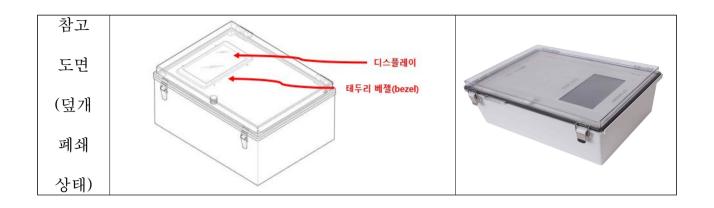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덮개 개방 상태)	외부 덮개(투명) 내부 덮개 자료 수집기 본체 케이스	





### 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케이스[또는 함체(含體)], 디스플레이 및 제어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 점, ② 상단 부분에 여닫이 형태의 덮개 2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부 덮개는 디스플레이부를 형성하고 있고, 외부 덮개는 그 내부의 덮개가 보이는 구조로 투명하게 형성된 점, ③ 내부 덮개의 바깥 면에 직사각 형상의 디스플레이가 형성되어 있고, 내부 덮개의 안쪽 면에 자료수집기가 부착되어 있는 점, ④ 케이스 본체 내부에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들 즉, 디스플레이, 자료수집기, 통신 모뎀, AC 차단기, DC 전원 출력기, AC 전원입력기, 센서입력기 등의 모듈을 갖추고 있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 라) 양 디자인의 차이점

그에 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② 사시도에서 볼 때, ③ 내부 덮개에 부착된 자료수집기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⑤ 자료수집기의 구성(또는 배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자료수집기가



'와 같이 본체 내부의 장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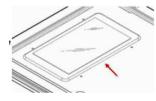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형성된데 비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본체 내

부의 장치들과 결합되도록 여러 개의 연결선이 외부에 드러나 있는 점, ⓒ 참고도면을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내부 덮개의 상부로부터 돌출되어 있고 그 테두리에 베젤(bezel)<sup>2)</sup>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디스플레이부가 상부로부터

함몰되어 있고 테두리에 베젤(bezel)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다.

☞ 정면에서 볼 때. ○ 내부 덮개에 부착된 자료수집기의 두께 및 위치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두께가 얇으면서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해

<sup>2)</sup> 베젤(bezel)은, 시계 계기판 등을 보호하는 유리나 플라스틱 따위를 고정하기 위하여 만든 홈의 의미로 쓰이는데, 그 규범 표기는 아직 미확정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서,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두께가



'와 같이 상대적으로 두터우면서 우즉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① 덮개 아래 부분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 아

래 부분이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 비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우측에

단자함이 돌출되어 부착되어 있는 점이 있다.

때 배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그 표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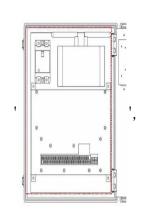
아무런 돌출된 모양이나 형상이 없는데 비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그 표면의 중앙에 검은 색 배경의 원(圓)이 형성되어 있

고, 그 원을 둘러싼 4개의 볼트 홈이 있는 차이가 있다.

● 평면에서 볼 때,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본체 케이스 내부에 통신 모뎀, AC 차단기, DC 전원출력기, AC 전원입력기, 센서입력기가 배치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 부분의 각 구성 부품의 형상, 구조, 배열, 배치 등을 세분하여 살필 경우 그

형상 및 모양 등에서 상당히 다르게 보이는 점, ① 양 디자인의 좌측 상단에서의 전원

플러그() 유

'제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무의 차이, 중앙 하단의 볼트 연결을 위한 12개의 요홈

(° 이의 유무의 차이, 보드에 설치된 칩 세트(chip set)의 크기 및 모양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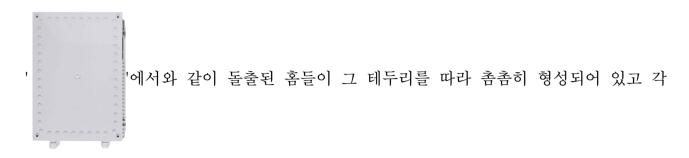
')가 있는 점이 있다.

☞ 저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에서와 같이 그 바닥면

이 아무런 문양이나 형식이 없는 민무늬의 형태인데 비해서, 확인대상디자인은



각의 모서리에 볼트 연결 등을 위한 홈이 4개가 있는 점 등이 있다.

#### 마) 구체적 검토

살피건대, 공통점 ①인 직육면체의 케이스 또는 함체를 구성하는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의 기능과 그 용도 및 앞서 인정한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구체적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지된 형상의 특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중요도를 높게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공통점 ②인 2개의 덮개 부분의형상은 위 선행디자인 1 내지 5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 중요도를 낮게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9, 10호증의 각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그 해당 디자인 분야 내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 케이스(함체)에 관련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등을 고려해 볼때, 위 각 공통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공통점 ③인 내부 덮개에 디스플레이 및 자료수집기가 부착된 형상과 공통점 ④의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을 구성하는 부분들(디스플레이, 자료수집기, 통신 모뎀, AC 차단기, DC 전원출력기, AC 전원입력기, 센서입력기)은 '사물인터넷 장

치'가 구동되기 위해 필요한 구성품들로 보이고, 차이점 ②인 케이스 본체 내의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각각의 부분들이 사물인터넷 장치의 구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 구성 부분들이 일체가 되는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의 형상, 구조, 배치 등의 차이, 전원 플러그의 유무, 칩세트(chip set)의 크기, 모양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에게서 느껴지는 심미감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차이점 ⑦, ⓒ인 케이스 본체 내부의 자료수집기의 위치, 크기 및 배열의차이, 테두리 및 베젤(bezel) 유무의 차이, 차이점 ⑥, ⑩인 배면 중앙의 원(圓)과 그 원을 둘러싼 4개의 볼트 홈 유무의 차이 및 바닥 면에서의 문양 등에서의 차이는 평면, 배면, 저면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이 작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 디자인의 물품의 개폐(開閉) 시에도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부분들로서, 이러한 각 부분의 차이점들에 의하여 양 디자인은 서로 다른 심미감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앞서 본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사건 등록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대상물품은 그 용도와 기능이 다르고, 서로 혼용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케이스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그 대상물품이 다른 선행디자인 1 내지 5에 의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선행디자인 1 내지 5에 해당되는 직육면체 형상의 케이스 본체[함체(含體)]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케이스 부분'과 비교해 볼 때, 몸체와 덮개의 구성 및 그 결합이 유사하고, 이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스플레이 부분' 및 '제어 부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도와 기능으로서 위의 부분들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서로 혼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사용되는 케이스 본체의 입체적인 형상과 그 사용형태 등을 고려해 보면, 설령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대상물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그 용도와 기능 등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대상물품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서로 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체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케이스 부분은 환경 관리용 사물인터넷(Iot) 장치 분야에서 독창적으로 채택된 형상 및 모양인 이른바 요부에 해당하므로, 전기·전자 장치 분야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케이스(함체)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케이스 부분은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케이스(함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과 아울러, 그 내부에 각종 기기들을 설치하거나 연결하기 위해 '직육면체'의 구조를 갖는 형상 등이 선행디자인 1 내지 5의 형상 등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5) 검토 결과의 정리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 에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2023. 5. 26.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을 모 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 [별지 1]

###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환경 관리용 사물인터넷(Iot) 장치

### 【디자인의 설명】

- 1. 본 디자인은 환경 관리용 사물인터넷(Iot)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게이트웨이를 일체형으로 구성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설치 공간의 최소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임.
- 2. 본 디자인의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 3. 도면 1.1은 전체적인 형태가 표현된 도면이고,

도면 1.2는 정면에서 바라본 도면이고,

도면 1.3은 배면에서 바라본 도면이고,

도면 1.4는 좌측에서 바라본 도면이고,

도면 1.5는 우측에서 바라본 도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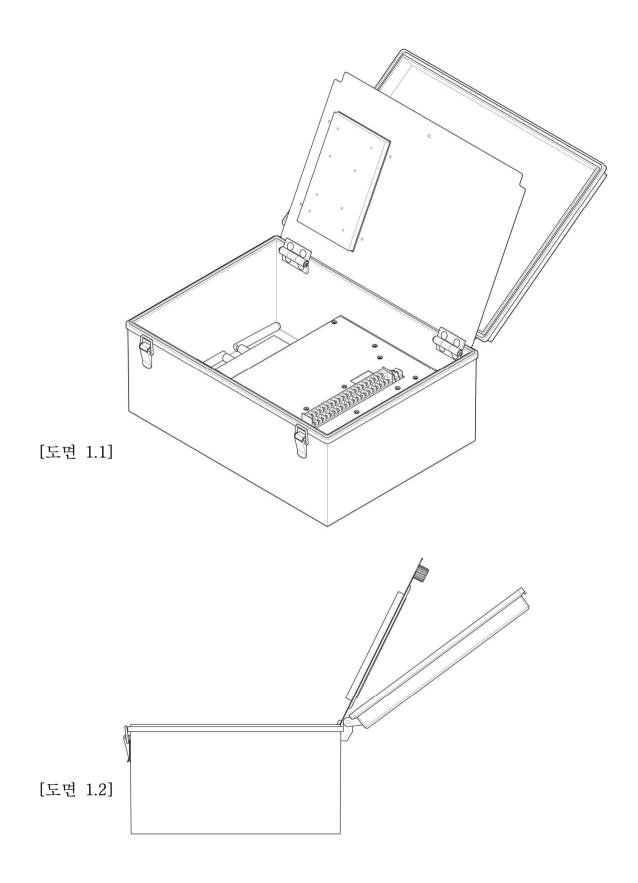
도면 1.6은 위에서 바라본 도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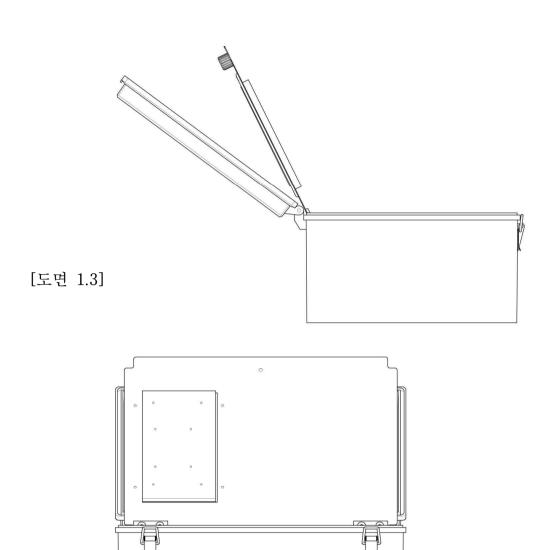
도면 1.7은 아래에서 바라본 도면이고,

참고도면 1.1은 외부 덮개를 덮은 상태의 도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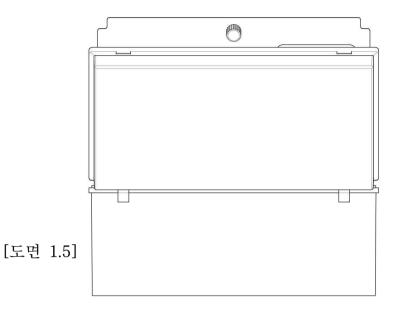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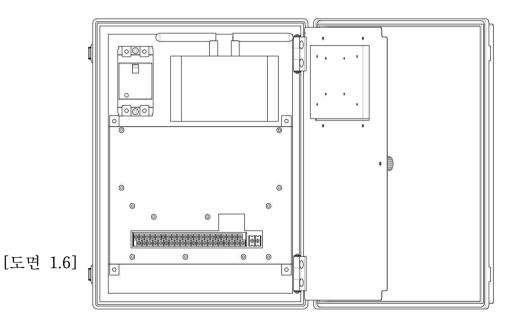
본 디자인 "환경 관리용 사물인터넷(Iot) 장치"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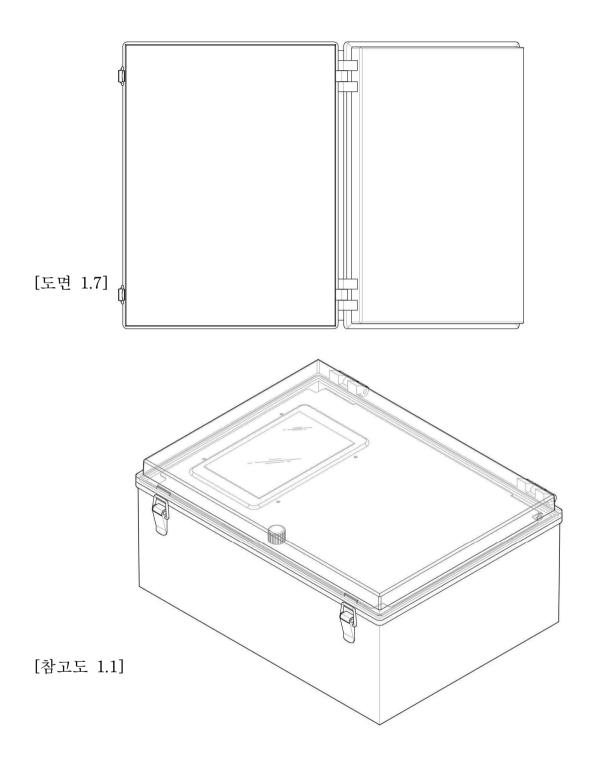




[도면 1.4]







끝.

## [별지 2]

##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IoT 게이트웨이 EIOT-200D

## 【디자인의 설명】

- 1. 금속 및 합성수지를 재질로 함.
- 2. 도면 1.1은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사진이고,

도면 1.2은 정면 부분을 표현한 사진이고,

도면 1.3는 배면 부분을 표현한 사진이고,

도면 1.4는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사진이고,

도면 1.5은 우측면 부분을 표현한 사진이고,

도면 1.6은 평면 부분을 표현한 사진이고,

도면 1.7은 저면 부분을 표현한 사진이고,

참고도면 1.1은 외부 덮개를 덮은 상태의 사진임.

##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 [도면 1.4]



[도면 1.5]



## [도면 1.6]



[도면 1.7]



# [참고도 1.1]



끝.

## [별지 3]

## 선행디자인들

## 가. 선행디자인 1



## 나. 선행디자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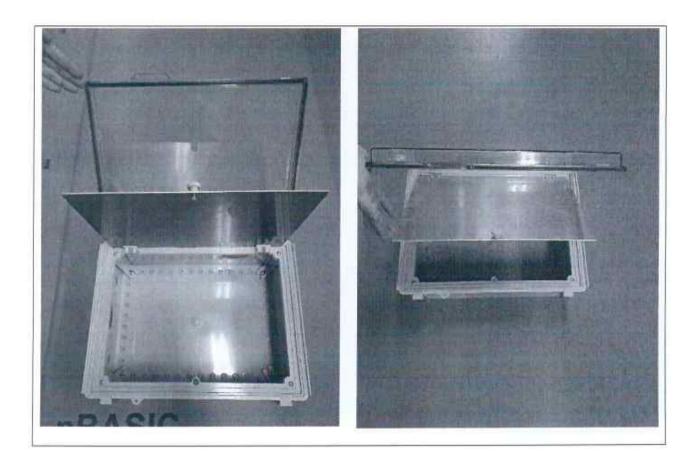
## 다. 선행디자인 3



## 라. 선행디자인 4



## 마. 선행디자인 5



끝.